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오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237

발의연월일: 2021. 5. 20.

발 의 자:오영훈·김병주·김승남

김승원 · 송재호 · 양정숙

오영환 • 이규민 • 이상헌

정청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과거 이 법에 따라 설립되었던 일반직공무원의 공무원직장협의회(이 하 "협의회"라 한다)는 2006년부터 시행된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대부분 공무원 노조로 전환되었음.

한편, 최근 이 법의 개정으로 협의회의 가입범위가 확대되어 기존에 협의회 가입이 불가능하였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과 소방경 이하 의 소방공무원도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음.

따라서, 기관단위로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고, 법에 나열된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협의회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.

이에 작은 규모의 협의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연합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협상력을 제고하고, 협의회가입이 제한되는 업무의 범위를 축소하여 가입기준을 완화하며, 기관

장은 협의회와의 합의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협의회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(안 제2조의 2 신설 등).

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조의2(연합협의회)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립된 협의회를 대표하는하나의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.
 - 1. 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·선거관리위원회
 - 2. 「정부조직법」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 - 3.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특별시·광역시·특별 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청
 - ② 연합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(국회사무총장·법원행정처장·헌법재판소사무처장·중앙선거관리위 원회사무총장,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교육감 등을 말한다)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3조제2항제3호 중 "비서, 기밀, 보안, 경비"를 "비서"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중 "협의회의"를 "협의회등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협의회"를 "협의회 및 연합협의회(이하 "협의회 등"이라 한다)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협의회는"을 "협의회등은" 으로, "구성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구성원의"를 "구성원 또 는 연합협의회를 구성하는 협의회의"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"협의회가"를 "협의회등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협의회와"를 "협의회등과"로, "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"를 "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협의회의"를 "협의회등의"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"협의회의"를 각각 "협의회등의" 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조의2(연합협의회) ① 제2조제 2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립된 협의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. 1. 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·선거관리위원회 2. 「정부조직법」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.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 도의 교육청 ② 연합협의회를 설립한 경우그 대표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(국회사무총장·법원행정 처장·헌법재판소사무처장·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,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·특별자치시장·포직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포직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포지사·특별

제3조(가입 범위) ① (생 략)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.
- 1. 2. (생략)
- 3. 인사, 예산, 경리, 물품출납, 비서, 기밀, 보안,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 사하는 공무원
- ③ (생략)
- 제5조(<u>협의회의</u> 기능) ① <u>협의회</u> 저는 기관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 - 1. ~ 4. (생 략)
 - ② <u>협의회는</u>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협의회 <u>구성원의</u> 직급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구 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협의위원을 선임(選任)하여야 한다.

제6조(기관장의 의무) ① 기관장 제6조(기관

<u> 자치도지사·교육감 등을 말한</u>
다)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여
<u>야 한다.</u>
세3조(가입 범위) ① (현행과 같
승)
②
1.・2. (현행과 같음)
3
발사
③ (현행과 같음)
세5조(협의회등의 기능) ① 협의
회 및 연합협의회(이하 "협의
회등"이라 한다)
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협의회등은
<u>구성</u>
원 또는 연합협의회를 구성하
는 협의회의
ll6조(기관장의 의무) ①

- 은 <u>협의회가</u>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구하면 성실히 협의 하여야 한다.
- ② 기관장은 <u>협의회와</u>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<u>최대</u> 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.
- ③ 기관장은 <u>협의회의</u>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7조(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) 협의회의 설립 단위, 가입 범위,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, 협의회의 협의위원의 선임, 협의회의 협의절차·시기·방법,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 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,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.

<u>협의회등이</u>
② <u>협의회등과</u>
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
한다.
③협의회등의
<u>.</u>
제7조(<u>협의회등의</u> 구성 및 운영
등에 관한 세부사항) <u>협의회등</u>
<u>의</u>
- <u>협의회등의</u>
<u>협</u> 의회등의
<u>협</u>
<u>의회등의</u>
.